
주요 정책 설명자료

- ① 빅데이터 활성화
 - ② 온라인 기반 자문업 활성화
 - ③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시행
 - ④ 핵심성장분야 정책자금(80조원) 지원
-

2016. 1. 18.

금 융 위 원 회

I. 빅데이터 활성화

1 빅데이터 현황

- 전통적으로 금융부문에서는 **상품개발, 마케팅, 부정사용 방지** (Fraud Detection System), **신용평가** 등에서 빅데이터가 활용

< 국내외 금융관련 빅데이터 활용사례 >

구분	금융회사	주요내용	
은행	해외	BOA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유치.수익률 제고
		Cit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출심사 정확도 제고
	국내	IBK기업은행	고객감성분석등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
		SC제일은행	개인 SNS를 이용한 타겟마케팅 활용
보험	해외	Progressive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를 통해 보험 재가입여부 결정
		MetroMile	날씨 데이터에 기반한 농작물 보험 판매
	국내	삼성화재	도덕적해이 사고 및 고위험군 사고 분석 시스템 개발
		교보생명	위험평가모델을 통한 언더라이팅 업무효율 개선
카드	해외	Visa	Real time messaging으로 타겟마케팅 실시
		JCB(일본)	가맹점, 구매패턴 등을 분석하여 실시간 할인쿠폰 발행
	국내	신한현대카드	고객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에 활용
		롯데카드	백화점, 마트 등 계열사와 제휴해 마케팅 및 서비스 제공

-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활용 초기단계**
 -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 미국 Progressive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운행기록정보 시스템 도입 이후 수익률은 업계평균의 3배, 자산가치는 지난 4년간 2배로 증가
 - 외국의 경우, 최근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
 - * Lenddo는 SNS를 토대로 SNS 지인 중 연체자가 있으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신용평가점수를 개발하여 소액대출업 영위
 -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2 빅데이터 활성화 제약요인

가. 제도적 차이

- (해외) 미국, 유럽연합 등의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활용이 자유로움
 - * ① (미국 그램-리치-브릴리법) 개인 식별 가능한 금융정보
 - ②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 반면
 - 신용정보법령은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 ⇒ 신용정보법에 따라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나. 인프라 차이

- (해외)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이 데이터중개업체로부터 정보수집을 통해 새로운 상품개발 등이 가능
 - 미국은 핀테크기업 등이 액시엄(Acxiom) 등과 같은 데이터중개업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어 활용하고 있음
 - * '14.3월 현재 미국에 257곳의 중대형 데이터브로커 존재(삼성경제연구소)
- (국내) 한국은 핀테크업체 등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다양한 통계 정보 등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다. 지침 미비

- 금융회사가 정보를 비식별화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비식별화 정보 활용에 주저
 - 개정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강화되어 금융회사의 비식별화 정보활용 노력 저해

3 개선방안

- ① (제도) 외국 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관련 법령 개정)
 -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 적용
 -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정보처리자가 비식별화한 정보가 다시 재식별화되지 않도록 기술적 및 기관적 조치 의무 부과
- ② (인프라) '16.1.1일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지원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빅데이터를 지원하여 개인신용정보의 균형있는 보호와 활용
 - ⇒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핀테크업체, 금융회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요파악('16.1~3월) → 빅데이터지원방안 마련('16.4월)
- ③ (비식별지침) 금융보안원이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 마련.시행(6월)
 - *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 규정
 -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가 재식별 위험 등으로 빅데이터 업무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비식별 지침 마련('16.6월)

4 기대효과

- ①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 ② 금융회사 등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 등이 활성화되어 금융산업이 한층 발전
- ③ 빅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처리업, 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관 업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Ⅱ. 온라인 기반의 자문업(로보어드바이저 등) 활성화

1 추진배경

-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 추세, 연금 등 장기상품 증가에 따라 금융상품 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
 -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으로 자산관리를 위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운영 관련 자문수요가 급증
- 그러나, 현재는 대다수 개인이 종합적·전문적 자문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자산관리에 어려움
 - 1:1 맞춤형 서비스라는 자문업의 특성상 고비용·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로 고액자산가 위주로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
 - 금융회사 판매창구에서는 객관적·종합적 자문보다는 판매 마진이 높은 상품, 자사상품 등에 대한 일회성 판매에 치중
- 자문의 낮은 접근성·고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효과적 자산관리를 지원할 필요
 - 고비용 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도입·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 온라인상으로 고객이 자신의 투자조건을 입력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리밸런싱 실행
 - ※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편리한 접근성과 낮은 자문료를 토대로 로보어드바이저가 크게 활성화
 - 자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등 기존 판매채널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자문서비스 제공

⇒ 저금리·고령화, IT환경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온라인에 기반한 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규제개선과 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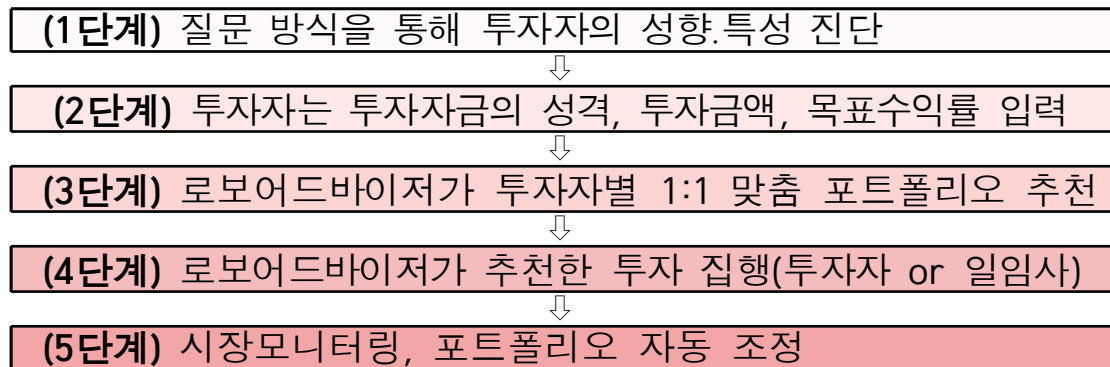
2 온라인 로보 등 자문업 활성화 방안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개요>

*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

- ① (개념)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자산관리서비스
- ② (프로세스) 투자자가 PC, 모바일 등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에 투자성향, 투자규모 및 투자목표 등을 입력하면,
 - 입력한 정보를 분석하고, 성향 분석에 기초한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적합한 판매사를 소개
 - 단순자문 이외에도 투자자별 포트폴리오대로 운영하고, 주기적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일임 서비스까지 진화

< 로보어드바이저 프로세스 >



- ③ (특징) 컴퓨터 기반의 저렴한 비용,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편리한 접근성, 자문 가능금액 최소화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자가 보다 쉽게 이용 가능
 - (주요 고객층) 20~40대의 청장년층, IT선호층이 주로 선호
 - (최소 투자금액) 작은 금액도 가능(미국: 업체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거나, 100,000달러 수준)
 - (자문료 등) 낮은 자문료(미국:오프라인업계의 절반 이하로, 관리 자산의 0.15~0.89%), 투자대상은 ETF를 중심으로 제시·운용

1)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및 활성화

□ (현행) 로보어드바이저를 지향하는 전문 자문사가 다수 진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행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는 자문업 규제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로보어드바이저 출현이 불가능

① (온라인 계약 불허) 대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온라인 전문회사의 출현을 사실상 제한

* 계약 체결시 상품설명서 성격의 서면자료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전자문서.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 불가

② (전문 자문인력 의무화) 자문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 제공을 금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문은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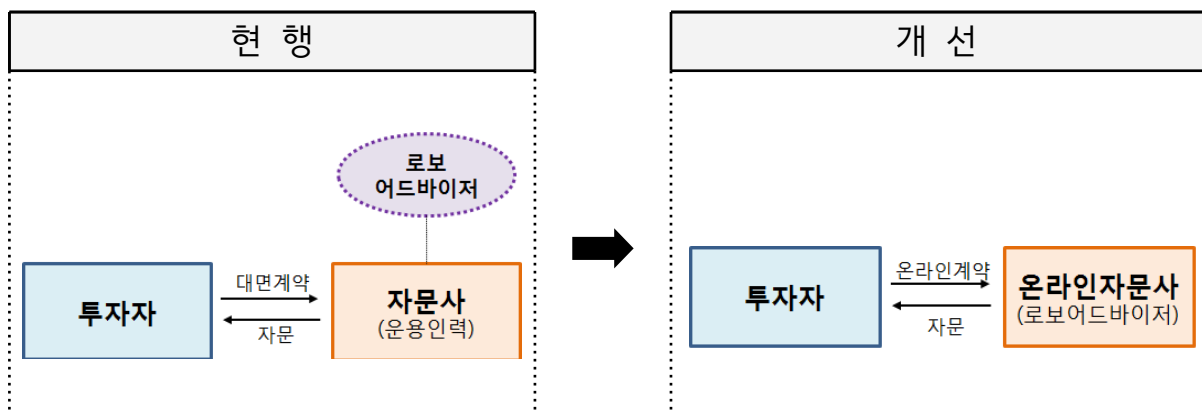
□ (개선) 온라인.로보 특성에 맞게 자문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① (온라인 계약 허용) 대면계약 체결의무를 완화하되, 계약의 주요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

* 전자적 방식의 교부 및 중요사항에 대해 직접입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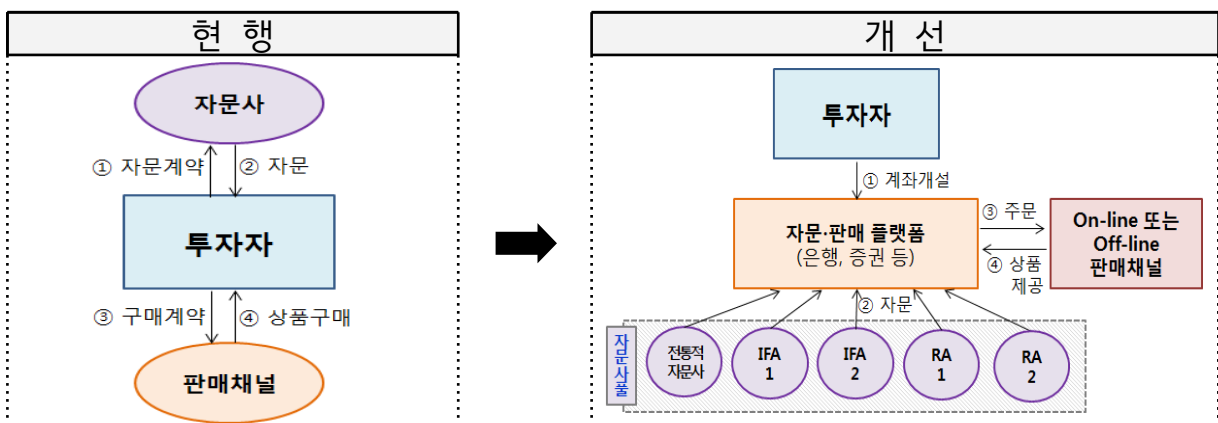
② (로보자문 허용) 유효성.적합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전문인력을 대체하여 자문서비스 제공 허용 추진

* 다만, 단순.표준화된 프로그램 난립으로 개인별 맞춤형 자문서비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로보어드바이저 등록단계에서 전산설비의 적정성 등 점검



2) 자문과 판매가 결합된 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

- (현행) 자문과 판매가 별도 주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자문결과를 반영한 금융상품 구매에 번거로움이 커서 자문 활성화에 한계
 - ① 소비자는 자문사와 판매사를 각각 방문하여 자문과 구매에 별도 계약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
 - ② 전문 자문사는 소비자 접점과 홍보수단이 부족하여, 소비자는 적합한 자문사를 선택하기 어려움
- (개선) 자문·판매를 결합한 one-stop 서비스를 도입·활성화하여 소비자가 전문 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손쉽게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은 IFA(독립투자자문사),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관계를 형성
 - 판매채널은 제휴관계를 맺은 자문사 풀 중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자문사를 매칭
 - 자문사는 연결된 소비자에게 1:1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해 주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온라인 등)을 제시



3 추진계획

- '16.1분기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세부 시행 방안 마련·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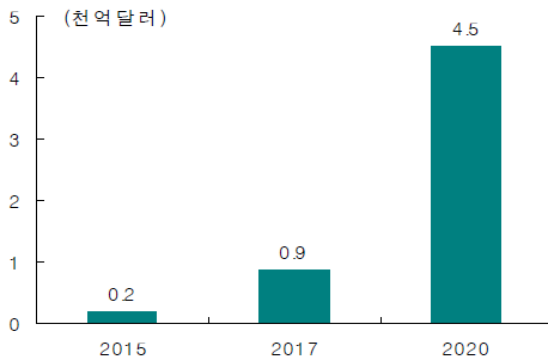
참고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해외사례

① (현황) 미국을 중심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

- 초기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Wealthfront 등 벤처기업들이 주도하고 그 이후 찰스슈왑 등 증권사들이 서비스 시작
- '14년 미국 상위 11개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의 관리 자산은 전년대비 65.2% 증가한 190억 달러 수준
- '15년 상반기 200억 달러에서 '20년에는 대략 23배 규모로 성장 (4,500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MyPrivateBanking 예상)

■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전망



자료 : MyPrivateBanking

■ Wealthfront의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관리 화면



자료 : WealthFront

②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 현황) 대표적 회사는 Wealthfront, Betterment, Personal Capital, Future Advisor 등이 있음

- 최근 글로벌 대형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인수*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확대 추세

* 블랙록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FutureAdvisor)를 인수, 피델리티는 Betterment 등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와 제휴

<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 비교('15.2월 기준) >

구분	Wealthfront	Betterment	Personal Capital	Future Advisor
최소투자금액(달러)	5,000	0	100,000	10,000
자문수수료(%)	0.25	0.15	0.89	0.50
AUM(억달러)	20	14	10	2.4
관리고객수(명)	22,000	65,000	2,500	1,700

Ⅲ.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시행

1 추진배경

- 은행 이용자가 거래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구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다수의 은행계좌 보유 중

* 주요 원인 : ①해지절차상 번거로움(은행창구 방문 필요), ②향후 다시 이용할 가능성 고려, ③계좌유지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이 없음(해외의 경우 잔액이 일정규모 하회시 수수료 부과), ④소액계좌 방치 후 계좌존재 자체를 망각

-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평균 5.4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주요국(2개 내외) 대비 2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 각국별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예금계좌 기준) >

순위	1	2	3	4	5	6	11	18	22	31
국가	일본	한국	몰타	그리스	터키	스위스	핀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계좌수	7.2	5.4	3.9	3.7	3.4	3.2	2.4	2.0	1.9	1.5

* 출처: IMF Financial Access Survey('14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기준, 세계 109개 국가 대상)

- 수십년간 계좌 순증만 지속되다 보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절반(49%, 1억7백만개)에 육박

* 개인 은행계좌 구분 : ①예·적금(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②투자(신탁, 펀드), ③보험(변액, 연금 등), ④대출, ⑤기타

- 장기 미사용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총 5.5조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원* 수준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장기미사용계좌 잔액 5.5조원('15.3월말) ÷ 20세이상 총인구 3,677만명('10년)

⇒ 국민이 잊고 지내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계좌를 자발적·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장기 미사용 계좌 사례(예시)

- A씨는 과거 대동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가 오랜기간 해외생활 후 귀국. 외환위기 후 은행이 통폐합되어 어느 은행에서 자금을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음.
- C씨는 최초로 계좌 개설시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는 홍보를 보고 △△은행을 방문했지만, 30년전 개설된 2만원짜리 계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헛걸음을 하게 됨.

2 추진방안 : Payinfo + Account info

- ◇ '15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계좌이동서비스(Payinfo)를 확대·개편하여 온라인상에서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시행('16下)

< Payinfo(자동이체 관리) >

< Account info(계좌관리) >



* '자동이체 내역'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

* 본인의 '계좌'를 조회, 잔고이전, 해지 등 통합관리

1) 계좌이동서비스(Payinfo) 전면시행('16년上) ('15.10.29. 보도자료 참고)

- (채널) Payinfo 홈페이지 + '각 은행 창구 및 모바일뱅킹'(2월)
- (서비스) 자동납부 +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2월)

* 자동이체 유형 : ①(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료 납부(예: 통신비)
②(자동송금) 고객 스스로 금액·주기를 설정(예: 월세, 회비, 펀드납입금)

- (자동납부 요금청구기관) 카드·보험·통신 등 주요 업종 + 신문사·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약 7만개)(6월)

2)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시행('16년下)

- (은행권 계좌조회)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예: 활동성/장기미사용/휴면) 등을 일괄 조회
- (잔고이전 및 해지)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이전 가능(예외적으로 공익상 기부를 위한 타인명의 계좌(예: 휴면예금관리재단)로의 이체는 허용)
- '잔고가 없는 계좌'(약 3천7백만개 추정, 장기 미사용 계좌 중 1/3 이상)에 대하여는 은행 방문없이 해지 처리

3 기대효과

- (국민) 미사용 계좌에 방치되었던 자금을 회수하여 경제적 이득
 - 미사용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스스로 차단하여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은행) 미사용 계좌 유지·관리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비용 절감
- (휴면예금관리재단) 계좌주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른 기부 행위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재원 마련에 기여



4 향후 계획

-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시행방안 마련(상반기)
 - 장기 미사용 계좌 등 은행계좌 현황 심층분석 및 기본방향 마련(1/4분기), 세부 실행방안 마련(2/4분기)
 - * 주요 논의사항(예시) : ①대상계좌의 범위(수시입출금 + α), ②장기 미사용의 기준(예: 1년), ③잔고이전시 한도설정(예: 30만원 이하) 필요 여부, ④온라인 외 창구 서비스 필요 여부, ⑤사망자 계좌 처리문제 등
- 전산시스템 개발*(3/4분기), Account info 서비스 개시(4/4분기)
 - * Payinfo와 Account info 중 어디를 접속하더라도 두 서비스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IV. 핵심성장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80조원 지원

1 추진배경

- 그동안 정책금융은 重厚長大 등 기간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
- 향후 정책금융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성장 기반이 되는 新 먹거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컨텐츠 등 핵심 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
 - 특히, 비즈니스 주기가 짧고, 초기 리스크가 높은 시장실패 영역에 대해 정책금융이 선제적으로 보완자적 역할을 수행
- ➔ 산은, 기은, 보증기관 등 정책금융 기관이 핵심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지원 추진

2 정책자금 지원: '16년 80조원 공급

① 중점 지원대상: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 (창조경제 분야(예시)) 스마트카 등 ICT융복합, 수술로봇 등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등
- (문화융성 분야(예시)) S/W,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

② 지원규모: '16년 80조원* 공급(대출 49조원, 보증 23조원, 투자 8조원)

- * [창조경제] 72.4조원(대출 45.6조원, 보증 19.4조원, 투자 7.4조원)
- [문화융성] 7.2조원(대출 3.2조원, 보증 3.5조원, 투자 0.5조원)



- 전체 정책자금(245조원) 중 창조경제·문화융성 등 중점지원 분야 지원 비중을 1/3 이상 우선 지원
- 창조경제, 문화융성 지원시 초기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여 투·융자, 기술기반 대출 등 지원 방식 다각화
 - 투자조합,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벤처캐피탈 등)간 협업을 통한 공동·간접투자 확대
 - 단순 대출에서 기술금융, IP금융, 투·융자 등 복합금융을 확대함으로써 핵심 성장동력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③ 중점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체질개선 유도

- ①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 물류 등 非제조업, 新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심사모형 확충, 보강
 - ➔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업간 차별이 없도록 관행과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
- ② 정책금융기관 영업부서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개선하여 창조경제 지원과 성과평가를 연계
- ③ 일선 현장에서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영업·심사 부문의 재량을 확대
- ④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수요발굴, 지원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성장동력 합동점검 TF*’를 구성·운영 → 미래부 발표자료 참고

* 미래부, 산자부, 문체부, 복지부, 금융위, 방통위, 중기청 등

* 하위분과로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협의체(간사: 복지부)’ 운영

가. 창조경제: 72.4조원

◆ 스마트카 등 ICT융복합, 수술로봇 등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등

① (대출) 산·기은, 중진공 등이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개발기술 사업화 기업 등에 45.6조원 지원

* (예) IP사업화자금대출, 고성장기업대출, 신성장유망 대출 등

② (보증) 신·기보 등이 기술창업, R&D, 신성장동력 분야에 총 19.4조원의 보증 공급

* (예) 고부가서비스보증, R&D보증 등

③ (투자) 산·기은 등이 IT 벤처창업,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산업에 직·간접 투자를 통해 7.4조원 공급

* (예) 스타트업펀드, 해외진출펀드, 기술금융펀드 등

나. 문화융성: 7.2조원

◆ S/W,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영화, 관광 등

① (대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 3.2조원 대출

* (예) 서비스산업지원자금, 문화콘텐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등

② (보증) 게임, 영화 등 프로젝트성 사업, 콘텐츠에 3.5조원 보증

* (예) 문화콘텐츠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③ (투자) 문화·콘텐츠 기업, PF 등에 대해 0.5조원 직·간접 투자

* (예)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유망서비스 콘텐츠 펀드 등